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14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 관계로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기상청 차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7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21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예산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인건비 및 경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가 아직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이자 추정액을 조속히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물질약 홍보활동 사업 추진 시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순환자원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폐광산의 정화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고 한중 미세먼지 실증 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구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등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부과절차 등을 개선하고 특정공사를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정확한 조사 및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제도개선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추경 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이를 타 사업에 전용하였는바 예산을 보다 엄밀히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부당하게 지급한 임직원 사택 관리비를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연례적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EU사무국 이관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노사정위원회가 직접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아카데미운영지원,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므로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직급여 상하한액에 관하여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술검토 지연, 성능시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약업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기상항공기 도입이 지연된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은 주요 기상장비 도입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제주도 이전 결정 이후 매년 연구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기상과학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연구원 결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해 해역 활성단층 조사와 규모가 작은 지진과 저층건물 피해 간 연관관계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결산 심사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영표** 예, 서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긴급현안질의 가능합니까?

○**위원장 홍영표** 긴급현안질의는 예산결산 문제를 끝내 놓고 할까요? 어떻게, 먼저 좀 하실까요?

○**河泰慶 위원** 끝내 놓고……

○**위원장 홍영표** 예, 저희 결산심사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질의 있으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삼화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결산심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먼저 한정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지금 저희가 노동부 결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했던 예비비 불승인과는 별개로 올해 3월에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예비비 있으실 것입니다. 3월에 50억 정도 승인받아서 집행 중인데 이 5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한정애 위원님, 예비비를 3월에 받았단 말이에요?

○**한정애 위원** 올해.

○**위원장 홍영표** 무슨 말입니까? 벌써 예비비를……

○**한정애 위원** 지금 2015년 결산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예비비로 쓰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홍보비 사용과 관련된 것이 논란이 됐고 결국 그것이 결산소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3월 달에 지금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서 50억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을 홍보비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에 대한 세부내역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 방으로 자세한 내역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개 예비비는 홍보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다 소진됐을 때 무슨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벌써, 지금 7월인데 무슨 예비비…… 올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정애 위원** 예, 올해 예비비, 3월 달에 승인받아서 쓰고 있는 예비비 말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장관님?

3월에 예비비를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원진 위원** 예비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으로 잡지 못한 항목이 갑자기 생기면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래도 3월에 했다고 하니까……

○**조원진 위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위원장 홍영표** 아니, 중간에 한 게 아니고 3월에 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원진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장 홍영표**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면 돼요.

○**조원진 위원** 자료제출은 하는데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을 왜 못 쓴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 홍영표** 그래도 관례, 못 들어본 이야기라서……

장관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올해 예비비 편성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반적인 명세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출하신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제가 알기로는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정법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지금 안 들립니다.

마이크 넣어 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올해 저희들 전체적으로 현장의 노동개혁 또 노동입법 등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총괄명세서는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라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50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부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래도 예비비를 편성하시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 그게 예비비 내용 아닌가요? 그것 없이 예비비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편성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쓰겠다 해서 3월에 예비비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왜 못 주신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사용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저희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단순히 예비비를 어떤 명목으로 썼는가 의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이 됐고 장관님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예비비가 벌써 50억이 책정됐고 그중에 30억이 홍보비로 배정됐다라는 얘기를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하고 나서 도대체 이 예비비가 무슨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

다, 노동부 쪽에. 그런데 노동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금방 말씀하셨던 국가재정법 얘기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하시지는 않았고 전례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본예산이라도 제출을 해 달라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2015년에 부적절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전례에 대해서 사실관계, 2016년에는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또다시 2016년에 부적절한 전례를 남기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자료제출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비비 관련해서는 사용 후에 국회에 익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가 그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 상정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이정미 위원** 그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내년도 결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먼저 조원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원진 위원** 예비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청와대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예산의 어떤 항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외의 목이 생긴 것이지요,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준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그 예비비를 그때그때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면 국회에서 그 집행된 사항을 당해 연도의 예비비를, 올해에 대한 예비비를 국회에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비비의 적당한 적정 수준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5월 31일 날 국회에 모든 결산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 예비비부터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예비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따라서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데 이게 환노위나 노동부나 환경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이 문제가 다 있고, 이 문제는 걸면 전체에 파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까지 집행할 때마다 예비비 내놔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부 일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 또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의 조금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의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올해 쓰는 예비비 부분 항목을 다 내놔라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관례도 관례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견제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회의 입장에서 그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쟁점으로 같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고용노동부가 다음 회의 때까지 기재부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가져올 것인지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창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영표 제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정에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다음번, 국가재정법상의 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다음번까지 해당 부처하고 논

의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아마 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나 청와대나 보고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자료도 국회에다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는 이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의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그래서 자료제출 관련한 말씀이시면……

○신창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영표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신창현 위원 지금 환경부와 기상청이 같이 회의를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환경부와 기상청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을 해서 마무리하고 노동부만 남아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위원장 홍영표 예, 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문진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하니까요.

제가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을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절차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승인받고 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없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엔 14년……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올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결산 예결위에서 소위 15년도 예비비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익년도에 정부가 제출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서 하겠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장관님, 지금 집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가 필요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게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초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 결산 예결위에서도……

○**위원장 홍영표** 이게 무슨 예비비가 특수활동비라든지 다른 공개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갖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집행 결과에 대한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대부분 다른 예산도 정부 예산을 수립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비비라 그 절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그 명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이것은 국가재정법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홍보비가 예비비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떠나서 집행 절차에 관해서 작년에 벌써 세 번 배정받았는데 배정받기 이전에 다 집행을 시작했거든요. 그걸 지금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 자체를 3월에 배정받았는데 배정받기 전에 작년처럼 또 그렇게 조기 집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얼마를 배정받아서 언제부터 어떻게 썼다 그런 내용 정도 알려 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14년 결산할 때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기사화 형식의 광고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 결산 이후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서도 그 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위원들께서 예비비 사용 방법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절차는 지키겠다고 지난번에 상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그 부분은 세세히 챙겨서 향후에는 그런 절차적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토론을 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정애 위원** 작년에 사용하셨던 예비비를 작년에 저희가 6월부터 해서 국정감사 때까지 사실은 문제를 계속 삼았지요. 그래서 일부 시정을 하시는 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사용한 예비비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좀 빨리 받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올해 중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과 관련했는데 도대체 노동부가 예비비 50억 중에 30억을 상반기에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홍보를 어디다가 과연 집행을 했는가, 이걸 다 하고 그냥 결산 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자료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성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냥 국회는 모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에 맞게끔 또는 예비비 특성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막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실 때 제출했었던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제가……

○**한정애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영표** 자, 어떻게……

장관님, 그 자료 제출은 여전히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답변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예산에 대해서 작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 관련 논란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것은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가 그 부분

을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무장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의 부서들도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예비비 제출의 내역을 예산 집행도 하지 않은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부처랑 협의를 하셔서 한정에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신에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선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은 뭐 야당이 이겼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전체 부서가 맞물려 있는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매년 결산 때, 예산할 때 다 매년 특활비하고 이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좀 해 주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한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강병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자료제출에 관련한 발언을 해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약간 좀 이렇게, 국가재정법을 말씀하시길래 저도 보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52조4항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한정에 간사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항과 2항과 3항에 있는 겁니다.

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아, 이 조항이 아니네요.

○**임이자 위원** 맞잖아요.

○**강병원 위원** 예비비를 요청하는 거, 요청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용하신 거에 대한 명세서가 아닌 겁니다, 요구하는 게. 이걸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까 장관께서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예비비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목적을 잠깐 밝히셨어요. 아마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나올 텐데 노동개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동 4법을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아마 2015년도에도 그 예비비를 받아서 원래 본예산에 홍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비비를 1차·2차·3차 또 받아서 노동개혁 홍보를 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 불이 꺼져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2016년도에 또 받은 것도 노동개혁에 대한 홍보비일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아서 홍보예산으로 잡았어야지 그게 뻥히 예상되어지는 걸 또 예비비로 잡았다는 겁니까? 이미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다라는 걸 왜 못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예비비를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본예산을 다 썼거나 소진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본예산 관련된 자료 요청도 고용노동부에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자료 제출에 예비비 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올해 얼마가 편성됐는데 어디다가 다 썼기 때문에 예비비가 얼마가 더 필

요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까지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부장관의 입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이후에 그것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에 위원님!

○한정에 위원 예비비 총괄 부서인 기재부가 해당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들여서 예비비 요청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출하신 내역 자체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정에 위원 그래서 그 제출한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것이 국회에 제출한다고 문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제출하는 것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노동부가 무슨 기재부에 예속되어 있는 부서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참석해서 예비비 관련 위원님들 지적 그다음에 기재부가 답변한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사용 관리 전체의 어떤 과정, 답을 죽 들으면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중재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마 기재부에다가, 지금 총괄명세서가 아니고 현재 기재부에다가 예비비 승인 신청한 명세서 이것을 공개하는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해서 그걸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재부에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무슨 법으로 비밀을 보호하라는 그런 항목도 아니고 명백히 공개해야 될, 국민에게 다 공개해야 될 그런 내용을 기재부에다 물어보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말씀을 하시니

까 회의를 진행하고 그 사이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기재부에 확인하시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한테 전화 한 통화 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의견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 중에 답변을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창현 위원 좋습니다.

○河泰慶 위원 잠깐, 저도 관련 발언……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예비비 문제가 대통령중심제 나라와 내각제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의 재량을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출 요청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역대 노동부에서 지금과 같은 사안, 기획된, 그리고 원래는 내년 5월 31일에 관례대로 제출해 왔던 것을 미리 제출했던, 우리나라 과거에 전례가 있는지 죽, 그리고 요청을 받았는데 제출을 안 했던 전례는 있는지, 안 했으면 각각 왜 안 했는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지금 이 사안의 성격이 뭐다, 지금 위원님들 특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국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홍보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홍보비를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승인을 받은 예산이 100억이다, 100억이 그대로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번같이 한 사례가 있는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실에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관계부처 협의해서 말씀드릴 때 그 사례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사관계 쪽의 홍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12~13억이어서 올해 예비비 편성할 때는 이미 금년도 정규예산은 거의 다 이미 사용을 한 뒤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河泰慶 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위원장 홍영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이 논의가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유를 말씀 올리면 어차피 작년도 예비비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노사정 대타협을 하게 된 시점이 2014년 10월이었습시다. 그래서 매일 만나서 우리가 큰 개혁,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와 장년의 고용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대타협을 하자라고 했고 그것 기본 합의를 작년 2014년 12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2015년도에 우리가 법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바꿀 것은 바꾸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거의 매일 노사정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년 12월 23일에 합의를 할 때 앞으로의 구체적인 합의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뜻을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65개 항에 대해서 끝없이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거의 마무리를 해 가려는 차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이 저희는 분명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소위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을 가져오고 특히 일자리 없는 분들의 격차 해소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영표** 지금 너무 쟁점을 벗어나는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자료 제출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이제 그 타협에 임박해서 정확하게 취지를 알리자는 차원

에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제작년에는 이미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버려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요청을 해서 썼고 그 과정에 3월 31일 이전에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소위 재가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쓴 절차적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사화된 광고를 하지 말라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듯이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박성은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여튼 자료 제출 문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자료 제출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위원장 홍영표** 제가 아까 중재안을 냈습니다. 기재부에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지금 국무회의에 보고한 명세서, 기재부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은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한정애 위원**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논쟁을 줄이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더……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河泰慶 위원** 지금 한정애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입장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의원내각제 국가와 우리처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요청한 자료는 이해를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河泰慶 위원** 역대 정권 내에서 관행이 어떻게 됐는지,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여태까지는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해서 가타부타 따지는 이런 관행이었다 하는 것이고, 오늘 자료 제출 요구의 핵심 문제는 집행하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것을 국회가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다는 것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의원내각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는 조금 다를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와 정부와의 어떤 견제, 균형,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만약에 저희 당이 야당이었으면 정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예비비 기획 단계부터 간섭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초선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질적 발전이나 정부와 국회의 발전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좀 더 심화 검토하는 그런 계기로 관련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다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노위 내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이후에 이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저희 당 쪽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상에 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에 관한 건……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 상임위든 국정감사든 할 때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회법 제128조입니다. 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1항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

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들을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의 요구의 건이 국가의 기밀 보호라든지 이런 것 아니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 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이 자료 문제를 좀 정리하세요.

그러나 국회법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영표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법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의 금년도 예산 내년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법에서, 할 때는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시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든.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자기의 법 논리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다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이 있는데 지금 그 법에 벗어나서 자꾸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은 뜻은 좋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다른 재정법이나 기타 법에 따라서 답변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리러한 법 때문에 못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법을 위반해서 그것을 내라 이렇

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하나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답변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건지 또 관례적으로 왜 이것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받아보고 하태경 간사 말씀대로 그 내용을 좀 보고 이 논의를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논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환경노동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대 국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산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지어 주시든지 이렇게……

○**위원장 홍영표** 예, 지금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자료 제출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강병원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료 제출에 관련한 건입니까?

○**강병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저희가 요구한,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자료 요구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52조에 나와 있는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한 명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51조에 나와 있는 어떻게 쓰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한 2016년도에 예비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승인해 달라라고 했던 심의해 달라라고 했던 그것을 달라고 하신 것이지 내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쓴 것 이렇게 이렇게 썼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국가재정법 22조(예비비) 조항을 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어떤 요구 조건은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고 하나는 시급성이고 하나는 또 불가피성이고 보충성입니다. 적어도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예비비로

한 50억을 요청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강병원 위원** 그 정도로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져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홍보비를 잡아왔지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하는 그 요청한 내용을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우리 환노위 상임위하고 장관께서 추진하시고 있는,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예비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게 공유 못 할 비밀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河泰慶 위원** 우리 질의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지금 강병원 위원님 얘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지금 내놓으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 이런 뜻 같아요.

○**강병원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진국 위원** 아니, 2016년도에 예비비 미리 쓴 것을.

○**강병원 위원** 아니에요.

○**河泰慶 위원** 기획된 거요.

○**문진국 위원** 기획된 것을 좀 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 봤을 때 토론을 깊이 해서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계 부처한테, 법에 그쪽이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주장, 저쪽은 저쪽 주장을 서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한테 회의를,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을 깊이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기상청은 어차피 거론이 됐으니까 거기가 이상이 없다면 퇴장을 시키고 노동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저도 그래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河泰慶 위원** 환경부장관한테도 똑같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거 역대 환경부에 예비비 기획단계에서 자료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오케이해서 자료 제출했던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활동 중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집행 이후에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안보 관련한 부분은 총액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안보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와 관련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의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제대로 기획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자, 이것은 안보와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아니면 안보와 관련 없는 환노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한번 기획 단계부터 보자 이런 요청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례상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국회가 모든 예산,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0% 기획 단계부터 보자, 이것은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구조를 보면 국회가 기획 단계부터 승인해 주는 예산이 있고, 승인해 주지만 집행 후에도 공개 안 하는 예산이 있고, 기획 단계는 간섭을 안 하지만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받는 예산이 있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와 정부 사이가 좋을 때는 정부가 알아서 잘 쓰고 나중에 보자 해 왔던 것이고, 국회와 정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당신들이 하는 것 못 믿겠으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보자 해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성격을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건설적인 관계를, 지금 박근혜정부 2년 남겨 놓고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특히 협치를 하자, 대통령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 부분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긴장관계에 있는 이슈도 있지만. 때문에 이 문제를 계기로 종합적으로 여야 협치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의 협치라는 정신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타당한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유의미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막지 말고 충분히 토론할 건 토론하고, 오늘 결산에서 결론 못 낸 부분도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니까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한번 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진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또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 진행이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제출의 문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또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1.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예비비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등등에서 논의가 됐고 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들은 결론은 예비비는 익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법절차를 따르는 게 옳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소관사항이 아니고 해서 시간을 주시면 협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논란이 굉장히 지루한 것 같습니다마는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국회는 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논란을 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종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예산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제출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河泰慶 위원** 동의하고요.

환경부와 기상청 먼저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데요.

지금 이슈가 환경부, 기상청을 먼저 보내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 논의를 하려면 같이 논의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지, 이 이슈가……

지금 앉아서 얘기해도 챗바퀴 돌듯이 계속 할 텐데……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제가 그 문제를 오늘의 안건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더 토론하겠다 이겁니다.

○**조원진 위원** 결산할 때 환노위 한번 보세요,

환노위 결산하는데 환경부하고 기상청 먼저 보낸 적이 있는지. 그렇게 안 합니다. 같이 결산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 특별하게 대단한 큰 이슈도 아닌데 이 이슈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상청은 보내고 노동부는 잡아 놓고 한다고요?

○**위원장 홍영표** 제 의견에 좀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예정된 안건대로 회의 진행을 하고 나서 다른 기타 토의사항으로 토의를 계속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10분만 정회하고 하시지요.

○**신창현 위원** 위원장님, 정말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잖아요. 여기 장관부터 공무원들 고급인력들이 와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여기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환경부 소관 그다음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부부터 먼저 결산심사에 대해서 소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가부를 묻고서 의결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신창현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그런 안건을 정리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토론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홍영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河泰慶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노동부하고의 관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노동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의 일반적인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 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듣는 것이 환경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회를 먼저 하시고 환경부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

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냥 지금 진행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진행을 하자는데 또 정회 요청을……

○**신창현 위원** 순서대로 하시지요. 아, 정말……

○**김삼화 위원** 제가……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사일정 1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이고 2번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1번 결산 문제는 사실은 큰 의견 차이가 없었고 예비비지출 때문에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된 거라서 1번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따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지요.

○**조원진 위원** 1시간 동안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논의 결과를 지금 모르겠습니까?

가서 협의해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것은 결산 문제가 아니고 2016년 예비비 승인 신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산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문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원진 위원** 예결위에 가 보세요. 예결위 가 보시면 예결위에서 결산해야 되는데 모든 45명 위원 중에서 30명이 사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까지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했으면 위원장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어느 선까지 답변을 해 달라…… 당장에 오늘 오후까지 답변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고 의사진행을 그대로 해 주시지요.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영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제출에 관한 토론은 일단 종결을 하고 원안대로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더 자료제출에 관한 말씀을 하시겠다면 기타 토론 시간에 하겠다 이런 말씀

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하시지요.

○**河泰慶 위원** 환노위 간사로서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고 환경부, 기상청은 끝나더라도 가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시고, 그 문제 가지고 노동부랑 같이 전체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환경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전부 다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삼화 예결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관련해서 제가 먼저 예결소위에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예비비지출의 집행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시급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53억 87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1차 예비비 13억 원은 2015년 3월 23일 신청을 했고 4월 2일 승인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예비비 30억 원은 2015년 8월 10일 신청돼서 8월 18일 승인이 됐고 8월 22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3차 예비비 10억 원은 2015년 12월 11일 신청돼서 12월 16일 승인되고 12월 28일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배정일 이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1차 예비비 배정일인 2015년 4월 2일 이전인 3월 19일, 그러니까 3월 19일은 예비비 신청을 한 3월 23일보다도 더 앞에 먼저 광고가 나간 겁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향신문 등 신문 25개 매체에 5억 216만 원을 사용을 했고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이에 KBS 등 방송매체 10개 사에 6억 7760만 원 등 11억 7976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을 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차 배정일은 2015년 8월 22일인데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억 6000만 원, 그리고 4억 3500만 원 중 1차 잔액 7500만 원은 제외한 돈입니다, 이것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그리고 3차 배정일은 2015년 12월 28일 이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와 정부 예산집행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 야당 쪽에서는 징계·변상 요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자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삼화 예결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한시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말씀,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원하시면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오늘 예비비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급성 그다음에 보충성 이런 요건들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집행하는 것은 문제되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절차적인 부분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위원회에 들어와서 예비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도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해서 좀 여쭙 보려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기획재정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예비비 관련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회에 익년도 5월 31일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서 국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부에 재량권을,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쪽 역대 정부들이 사업을 해 오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비밀비재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잠깐 아는 것만 해도, 저번에 뉴스를 통해서 내가 들은 것만 해도 건국 60주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광복 60주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행정수도 건설 광고비 또 해외순방 계기 활용 홍보 예산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가 배정도 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장관님.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잘못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비단 우리 고용노동부뿐만 아니고 기재부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 건가 다른 부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 노동개혁 관련해서 예비비의 불가피성을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31일까지 합의를 하기로 기본합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끝내고 그 뒤로 현장에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하고 특히 격차 해소 쪽에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또 법 개정해야 될 것은 다 작년에 마무리한다는 게 기본합의였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전후해서 3월 20일부터 현장에서는 노동단체가 여러 다른 홍보 내지는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국민들도 혼란이 왔고. 그래서 3월 31일 대타협을 일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노동개혁의 목적이 청년일자리, 장년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격차해소 이런 취지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로 대타협 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3월 31일 이전에 국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에 의해서 대타협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노동계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7, 8월에 다시, 8월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내부에서 논란이 있고 타협에 들어온 노동계도 현장이 이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 우리도 힘들다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 개정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통하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고 있고 또 현장에 개최될, 우리가 정년 60세 하기 전에 임금체계 고치라는 내용도 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리자는 취지를 두 번째 합의를 하면서 했고요.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정기국회 때 입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임시국회, 임시국회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현장에 또 금년도부터 4대 현장 개혁 내용과 더불어서 그 절박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걸쳐서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본 위원은 여기 국회에……

○서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질의 중입니다.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에 한국노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이나 시급성이나 보충성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문제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여야 간에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공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용노동부만큼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차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서형수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짧게 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오늘 의사일정이 2건이지요?

○위원장 홍영표 예.

○서형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논의하고 있는 게 어느 건을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홍영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1호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이고요, 2호 안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인데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안건 자체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논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홍영표 예, 결산입니다.

○서형수 위원 예비비 건 아니지요?

○위원장 홍영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됐다고 하는……

○서형수 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은 별건이거든요.

○임이자 위원 예비비 작년의 것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작년의 것.

○서형수 위원 작년 것도 별건입니다. 별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 안에서 별건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홍영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금 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대개 결산에 대한 토론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관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신창현 위원 1호와 2호를 같이 상정하셨어요.

○위원장 홍영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상정을 했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꼭 분리가 필요하겠다면 환경부와 기상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분리해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예비비의 사용 절차도 문제지만 지난번 결산 심의 때 저희들이 제기했던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 듣다 보니까 장관님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지요, 노사정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노동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삼자가 합의를 해야지 노사정 대타협이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삼자가 논의 중이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노동자 측이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 국민들한테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53억이나 되는 과도한 홍보비를 그것도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는 것이 옳습니까? 노사정위원회 취지에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사정 간에 큰 그림을 그려 놓고, 14년 12월 23일 날 큰 방향과 그림 그다음에 일정을 그려 놓고 작년 1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큰 방향……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내용이 현장에서 근로자들 간에도 ‘해고를 쉽게 한다, 임금을 깎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전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정미 위원** 아니,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는 대표들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내용도 다 논의를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확하게 현장한테 알리는 것이 합의에도 유리하다라고……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합의를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노동자 측이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부의 입장이 옳습니다’라고 홍보를 한 게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노동개혁의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들딸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

동개혁을 한다는 취지가 메인 취지 아닙니까?

○**이정미 위원** 노동개혁이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5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가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5법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이정미 위원** 초창기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안 되면,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마치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한 주체인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홍보가 사용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압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사정에 타협했던,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대타협에 참여했던 노동단체도 현장이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동개혁의 목적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미 위원** 노동부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신 분을 상당히 모욕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라든가 노동자의 처지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해 주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노동자 대표는 그 목소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지금 방금 말씀은 그런 발언의 취지를 담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니지요. 우리 참여했던 노동단체 대표님들께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요청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리가 현장한테 정확히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정미 위원** 아니요, 그래서 노동자 위원 측이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또 홍보도 필요했지요.

○**이정미 위원** 그 요청이 노동자 측에서 요구가 됐느냐고요. 노동개혁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금 현장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 이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요청보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현장에 알리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께서 노동자 위원이 그것을 불안해했다는 것은 대표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발언하십시오.

○**신보라 위원** 장관님,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노동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사정 모두 현재 지금의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 청년일자리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진입장벽들이 굉장히 크다, 이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2014년 12월 23일에, 8월 19일에 구조개선특위 설치를 의결을 했고 12월 23일에 그 기본합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을 하게 됐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했던 때가 9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마 이 당시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어떤 홍보비를 편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보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3월 31일이 원래 노사정 대타협 기한이었지만 그 시한을 넘기게 됐고 또 4월 8일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공식 선언하면서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고 그 이후에 또한 4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8월 26일에 한국노총이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관련 입법들이 연내에 결국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을 겪어 왔다는 걸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문제가 됐기에 도대체 예비비 지출에 들어 있는 홍보비가 어떤 내용의 콘텐츠로 집행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됐던 이 신문광고를 보면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리는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미생·국제시장 TV 광고,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행된 광고를 보면 ‘취업 걱정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고 노동, 8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노사정 대타협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돼서 이제 노사정 대타협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좀 설명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이 복귀를 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텃던 8월에 집행됐던 TV 광고를 보면 여기에도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는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출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의 내용을 보자 하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적절성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가재정법 시행지침이 편성을 하고 나서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차상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장관의 사과가 또 명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이나 내용과 콘텐츠상의 적절성은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14년, 15년 예산은 이미 14년 9월에 편성이 돼 버렸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대타협이 본격적으로 돼서 12월 23일 날 기본방향 합의서를 하고 또 15년 3월 31일까지 하자라고 됐고, 그런 일정 속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 날 우리가,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해서 했던 거는 3월 31일까지 대타협을 해야 관련된 임금체계 개편이랄지 현장의 관행을 고치는 문제들이 15년도에 고쳐지고 또 관련된 입법이 되고 그래야 16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정년 60세가 되어도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큰 틀의 합의가 노사정 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국민들께 또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그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철저히 꼼꼼히 따져서 이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시급성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우리 신보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지 말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안건 2항에 지금 저희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항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큰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2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노동부 결산하다 보니까요, 최저임금의 90%로 실업급여 최저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정권 이후에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는 뭐냐? 일종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생산적 복지여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 욕을 꺾는 복지는 나쁜 복지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유럽의 과다한 복지사회, 복지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복지로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문화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90%를 받으면 10% 덜 받고 놀지 왜 일을 하느냐……이 부분은 노동의욕을 꺾는, 특히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꺾는 나쁜 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광고. 어떤 내용을 했나…… 저는 장관님께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잘못했느냐면 지금 어쨌든 궁극적으로 노사정 합의에서 추진한 노동 4법 거기에 무슨 청년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청년들한테 몇몇하려면 정말 청년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고, 합의해 놓고 뭐 이런 광고를 하셨어야지, 장관님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안산에 파견법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뿌리산업, 도금회사 다녀왔습니다. 그 파견법도 55세 이상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청년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건 장년층을 위해서 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청년을 위한 법이 있습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국민한테 지금 백배사죄를 해야 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몇 년간 거짓말을 했다, 약속은 못 지켰다……

아니, 지금 장관님이 반성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상상황일 때 자기 보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요. 누가 봤어요, 국민이. 그럼 청와대에라도 바로 알려야지요. 뭐 경찰서에 먼저 알리고 차근차근 올라가길 기다립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 지옥이에요. 청년들은 지옥이에요. 비상상황입니다. 청년실업이 더 늘었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봤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저 극단적인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왜 저런

결정, 브렉시트 같은 결정이 자기 국민들 스스로, 스스로 망가지는 그 결정을 하느냐? 분노 때문입니다, 이 체제에 대한 분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관님이 사과해야 될 것은 절차도 절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장관님 계시는 동안 청년일자리 얼마나 늘었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얼마나 됐습니까? 노동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일자리의 절박성과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의 부족을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타협을 했고.

그래서 노동개혁은, 그래서 노동계에서 상위 10%의 임금 자제, 그것만 가지고 청년 채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기업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상생의, 청년층을 늘리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돼 있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불공정성 이 부분을 해소를 해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거를, 여론을 마련하자, 더불어서……

○**河泰慶** 위원 장관님, 잠깐 말 좀 끊겠습니다.

지금 노동 4법, 파견법 포함해서, 아니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일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청년일자리가 없습니다. 노동개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河泰慶** 위원 답변……

○**위원장 홍영표**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예,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거기에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약 15만 개 일자리가 청년들

을 위해서 창출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투자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또 투자했을 때 일자리 늘어나는 고용탄성치를 높여 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대기업이 청년들 고용을 다 책임질 수 없다, 격차를 해소해서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나가는 거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청년일자리가 풀린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타협을 했고 그 부분이 현장에 실천되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편에서는 현실의 청년의 어려움에 비해서 너무 멀리 이게 보이고 부족하다는 지적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한정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에** 위원 예비비 말고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청년 일자리 어쨌든 늘리겠다고 청년 예산과 관련한 것들을 대거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도 제대로 다 못 쓰고, 뭐 추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불용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에 노동부가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예산이 충실하게 청년 창업이든 청년 취업이든 그 예산에 쓰여져서 제대로 된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홍보에 치중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치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알려주시고, 2016년의 예산을 처리하실 때는 충실하게 청년 취업 예산이 정말로 불용이 안 생겨서 내년에 제대로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할 수 있나요, 여기서?

○**위원장 홍영표** 예, 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발언은 3분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전체 결산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긴 했지만 세대 간 상생고용이나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이런 것들의 대부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또 세대 간 상생 지원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그다음에 청년고용을 둘 다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구조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불용의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거의 쉽지 않다고 하는 현상의 상황들이 있고, 또한 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지원금을 주지만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평생고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압박을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명확한 어떤 대책을 갖지 못하면 또한 여전히 그 목표한 바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할 테고 불용도 또 여전할 것이라고 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청년을 직접 채용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체계 개편 또는 임금 동결 이렇게 기업들이 노력하고 그 재원에다가 기업이 더 보태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상생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대타협을 하고 대타협 과정에서도 좀 3월에 하려다 못 하고 바로 9월로 넘어갔고 또 대타협 이후에 입법 과정이나 저희들 지침 과정도 좀 늦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시장도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을 못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 시점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채용 계획을 승인을 맡아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임금을 준 뒤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후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좀 한, 벌써 신청 들어온 게 1만 명 이상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청년을 채

용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요건도 좀 보완해서 청년 채용에 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타협을 했고 한 정신들이 현장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각각 가지, 가지들이 실천되어서 청년을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정말 말로만 청년일자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명확한 성과를 내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도 임금피크제 하면 13만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광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 건은 주로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대한 예비비지출 문제가 없으면 환경부와 기상청은 먼저 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河泰慶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오늘요?

○**河泰慶 위원** 예,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신창현 위원** 자료 오늘 줄 수 있나요?
 ○**河泰慶 위원** 아니요, 필요하지요.
 ○**강병원 위원** 자료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河泰慶 위원** 오늘 어쨌든 이 문제가 필요한 이유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다 걸쳐 있는 문제고 우리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 환경부만 배제하는 것은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면요 일단은 환경부를…… 아니, 뭐 우리……
 ○**강병원 위원** 환경부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은데.
 ○**河泰慶 위원** 아니,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보내 드리든지 판단을……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 하 간사, 하태경 간사께서는……
 환경부도 예비비지출의 건이 있습니까?
 ○**신창현 위원**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작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래서 환경부는 없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보고 제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위원장 홍영표** 그러니까 과거의?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홍영표** 과거 예비비지출의 건……
 ○**河泰慶 위원** 예, 사례……
 ○**강병원 위원** 그 자료라는 게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받으셔서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河泰慶 위원** 그러면 노동부도 똑같지요. 노동부는 받고 환경부는 안 받으니까?
 ○**강병원 위원** 노동부는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위원님,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한 건 따로 토의를 하기로 했고 지금은……
 ○**河泰慶 위원** 오늘 끝내자고요, 오늘 자료 다 받고. 그다음에 노동부에도 제가 동일한 성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에…… 양 부처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원칙이 뭔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됩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 간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이게 책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다 따라 가지고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이자 위원** 아니, 하 간사님의 말씀은……
 ○**강병원 위원** 말씀하신 게 우리 위원회 안건이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 하 간사님 말씀은 새누리당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면 간사끼리 합의해서 안건을 올리시든지.
 ○**위원장 홍영표** 지금 이미 그렇게 의사일정에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론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정리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그냥 우리 예결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하고 부대의견,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정계·변상에 대한 어떤 부대의견을 붙여서 넘길 것인지 이것을 토론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정도 됐으니 그냥 결산으로 넘기자, 부대의견 없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위원님들의 다수가 부대의견, 이거는 명백히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붙여서 이것을 넘겨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환경부와 기상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먼저 퇴장하시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河泰慶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요?

○**위원장 홍영표** 어떻게,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10분만 정회를……

○**한정애 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홍영표** 그럴까요?

그러면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11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토론을 위해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예결산위원회로 이 안을 보낼 때는 승인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부대의견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의견은 부대의견에 시정조치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고, 또 야당 측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또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토론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아까 자료요청 건 지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요.

○**河泰慶 위원** 환경부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2014년 이후에는 예비비를 쓴 적이 없고요. 2013년 이전까지는 대개 태풍 등 재해복구 또 옛날에 구제역 났을 때 상수도 지원 등 이런 쪽에 과거에 쓴 것이 있습

니다만 한 페이지짜리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추가 자료요청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없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 사례는 없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김삼화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의사진행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과 적절성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위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야당에서는 예비비 사용자체도 타당하지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예비비 집행 절차에 적법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법하게 절차를 따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기재위에서도 2015년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라 하면서 시정 의견과 부대의견으로 향후 예비비를 정책홍보비 집행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썼고 그 부분은 기재위가 시정을 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거기에 절차의 불법성까지 있기 때문에 시정보다는 더 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시정 의견 말고 시정 의견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환경부는 과거 예비비를 썼던 사례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노동부가 과거에 예비비를 썼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쓰기는 했습니다. 2007년에 예비비를 29억을 썼는데 이때 노총과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노총에 쥐야 되는 돈을 주지 않아서 이게 소송의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필요로 해서 특별하게 29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이견 예상치 못했던 돈이니까요.

그리고 2010년의 경우에는 취업장려수당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쥐야 되는 수당인데 예산에서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116억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사업비니까.

2013년에 44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비용이 발생해서 2013년에 44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경우에는 진폐급여의—이것도 당연히 정부가 쥐야 되는 비용인데—부족으로 해서 예비비 편성을 통해서 184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써 왔던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감안이 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위원님들 다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15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홍보비로 쓴 것이 적합하나, 안 하냐는 이미 예산 담당 부처인 기재부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시정을 받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예산을 쓴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법한 방식으로 대통령 승인 이전에 또 배정 이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시정보다는 좀 더 강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저희가 아침에, 오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미 노동부는 2016년도도 홍보비로 50억을 예비비로 설정해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에 저희가 16년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위원님들 다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계 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장석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광고 홍보를 뭐 뭐 했는지 잘 몰라요. 장관님 무슨 홍보를 했는지 한 번 더 되짚어 주시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긴박성, 시급성과 연관해서 2014년 말부터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우리 장년들의,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 안정도 되기 어렵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데 노사정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12월 23일 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를 했고 이것을 15년 3월 31일까지 14개 과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또 현장에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절박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과와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9월 15일 대타협 이후에, 대타협 내용 그 이후에 현장에서 또 우리 정부가 법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법에는 예비비를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예비비는 배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위배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의결되면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12월 정도 되면 공고를 내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정부 측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부터의 토론은 상당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인가 하면 공무원들 변상 그게 행정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이 충족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국가에 손해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담당자까지 징계 사안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에 감사 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부실이나 비리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이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이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은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여당 쪽에서도 했고 정부 쪽에서도 각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결론적으로 토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언제까지, 지금 다른 위원회도 가동되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우리 간사님들이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빨리 어떤 식이든지 결말을 내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이런 부분에서 논쟁을 좀 피할 때 안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중간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계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김삼화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하시고 서형수 위원님.

○**김삼화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전체위원회로 오게 됐고 지금 전체위원회에서도 오전도 계속 저희 간사 회의도 했고 잠시 모여서도 얘기했지만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론은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 결론이 안 난다면 결국 의결을 하는 절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의결하기 전에 방금 장관님 답변 중에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집행지침에만 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재정법 51조3항, 시행령 23조에 ‘기획재정부장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 배정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침이 아니고 상위 법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지금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시행령 확인이 뭐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 확인하세요, 장관님.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거의 정부 예산 중에서 예비비 집행한 것을 보면 건국 60주년 사업에서도 보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했다가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주의로 댔습니다, 주의. 시정 요구 수준이 주의였고요.

그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 광고비 이것도 예비비 배정했다가 TV 광고만 제작하고 실제로 방영 안 했습니다. 그것 예산 낭비지요. 이랬어도 여건 시정만 요구했고요. 그 조치 결과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해외순방계기 홍보 예산에서도 여기는 예비비 배정 전에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다가 미리 집행하고 사후에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수준을 높여 가지고 하자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거지요.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도 좀 진작해 주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단단히 감시하고, 아까 장관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주의나 시정…… 시정까지는 그래도 조치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하시고 다음 송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이것은 홍보의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각 당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이 논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 예비비 사용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국회, 우리 행정부와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그래서 심사하고 결산도 심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단 1원이라도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건의 절차 위배는 기재부 지침 위배 사항이 아니고 국가재정법의 51조3항을 위배하신 겁니다. 법령을 위배하신 겁니다, 법을. 그것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15년도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보면 1차가 이렇습니다. 3월 23일 날 요구를 하시고 3월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대통령은 4월 2일 날 승인을 합니다. 배정도 바로 그날 4월 2일 날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지키고 그것을 또 감시하는 곳인데 국가기관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넘어가 주자 이런 얘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명백하게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럴 때만이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국민 앞에서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 송옥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오전부터 여러 분들이 유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국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지침과 법이 형식이 다른 거지 사실은 국민이나 국가에서 정한 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을 위반했다고 약한 거고 법을 위반했다고 중하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따지지시지요?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위배되면 그 부분이 반복될 수 있고 재판에서 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그런 기준보다는 위반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일지라도 사실은 목적이나 취지나 아니면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비비 전체 액수가 54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다른 긴급한 일도 많을 텐데 100%를 다 홍보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부분도 사실은 크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주의 조치나 시정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국회가 사실은 관행을 깨기 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 부분을 따져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많이 변화된 모습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양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처럼 그냥 주의나 시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그것보다 높은 단위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저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 차례 다 시정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고치고 계속 습관적으로 예비비를 선지출하잖아요, 승인하고 배정도 하기 전에. 여러 번 시정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면 저도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또 이게 한 번 벌어진 일이면 저도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무려 23건이나,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이미 우리 노동부는 예비비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견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행정부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이런 관행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행정부가 스스로 한번

판단하게 해 보자 하는 취지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 징계로 의결을 해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부인 감사원에서 이 건 징계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원회에서는 그것마저도 못 받아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이 전체회의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저간의 사정도 감안해 주시고요.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토론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정에 **위원** 잠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예결위원회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다른 건.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니 ‘그건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부는 그 불가능한 일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장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장 **홍영표**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유 부총리 말씀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 없이,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 없이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예비비 편성해서 불가피성·보충성을 다 협의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로 하자’라고 다 합의를 한 뒤에 절차를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 이 절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 부분을 저희들이 거치기 전에 썼다는 부분이 고요. 실무적으로 다 협의는 완료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볍게 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절차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또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 3월 31일 날 대타협…… 이미 시한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자꾸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3월 31일 이전에 우선 하자라고 실무적으로 합의하고 했다는 그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노동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장관님, 작년 한 해는 늘 그렇게 불가피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한정에 **위원** 늘 불가피하셔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승인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셔야 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작년 12월 23일 날 노사정……

○한정에 **위원** 그것은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관례인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민들 전체적으로, 17년 만에 우리가 대타협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봤습니다.

○한정에 **위원** 장관님, 그 전에도, 2013년에도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노사정 합의한 것도 있고요. 합의는 작게 크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09년에도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요. 은행권의 임금 20% 깎을 때도 노사정 합의했었고요. 다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도입할 때도 노사정 합의했었고요. 17년 만에 무슨 대타협 말씀하시는데 늘 타협은 있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적으로 큰, 통합해서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 가지고 대타협을 한 적은 없었지요.

○위원장 **홍영표** 자, 토론을 좀 종결했으면 하

는데요.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신보라 위원** 아까 손들었는데……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신보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문진국 위원님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김삼화 위원님께서 아까 내용적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절차적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항목에서 더 문제가 되므로 기재위에서 시정의견을 냈지만 여기보다 더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펴셨지만 또 강병원 위원께서는……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제 여야간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절차적 적절성 부분에서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의견이 보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13년, 2014년 예비비에 관련한 문제들을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건 한정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15년 결산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처음 벌어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보다 명확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시정의견으로 달되 다시는 이런 일들이 2016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장관님이 자꾸 유보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법령을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목,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23조 예비비의 배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

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배정된 후에,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률, 시행령, 지침 이렇게 계통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제가 지금까지 죽 들어 보니까 할 말들은 서로들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행령을 또 서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또 장관님도 일부는 시인하고 또 일부는 거처서 했다 이렇게 답변도 나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국회가, 올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어떻든 이렇든 서로의, 이 20대라는 국회가 지금 협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가…… 과거에,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쓴 것은 지금 한정애 위원님한테 들었으니까 사실 아는 건데, 장관께서도 지금 보면 일부는 예비비에서 확실하게 승인을 못 받고 이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이런 시인까지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당에서 협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들 이번만은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됐다면 정말 우리 당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첫마디에 제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안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쪽으로 봤을 때……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언뜻 알았을 때,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장은 사전에 쓰고 추후로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솔직한 얘기로 환노위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충분한 토론을 다 했으니까 같이 함께 동지로서 위원님들이 협치로 잘 가서 이번만은…… 또 우리 당에서 얘기했을 때는 늘상 얘기하는 게 절차로 해서는 시정 쪽으로 자꾸 나오고 저쪽에서는 센 쪽으로 한번 벌을 주자, 몇 번 했으니까 징계를 주자 이런 취지인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죽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처음이니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초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의 가치, 정말 여야를 떠나서 협치하는 마음으로 이 정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 보자는 이야기를 수차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장관께서 실수를 해서 시인도 했고 이렇다면 이번만은 정말…… 다음에 이런 게 있다면 한정애 위원님같이, 작년에 그런 것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그때 가서 징계를 줘도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만은 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얘기들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 쪽으로 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차……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문진국 위원께서 예비비를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사용한 것이 실수다 이것은 받아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전에도 우리가 광고 방식을 놓고 한정애 위원님이 문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그래서 소위에서도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 징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절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같은 행정부인 감사원에 이것이 정말 시정 요구사항인지 징계사항인지 행정부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받아 주셔야지요. 그게 국회 본연의 업무 아닌가?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저는 신창현 위원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하기 어려운데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또 감사원한테 이걸 미룬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책

임기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더라도 국회가, 우리 위원회가 의사를 분명히 해야지 그것을 감사원한테 또 미루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자는 것은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어떻게 할까요?

○**임이자 위원** 비단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또 예비비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상임위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또 어느 상임위는 그냥 시정조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니까, 총괄적으로?

저는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쳐서 가면 예결산위원회에서 또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예.

○**임이자 위원** 예결산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총괄적으로 모든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루어지면 거기서 또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꼭 굳이 감사원의 감사 조치까지 해서 우리가 올릴 필요 뭐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분만 더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주변에 보면 법 위반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스러운 모습들 우리 많이 봐 왔습니다.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준다는 것이랑 또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위반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자그마치 53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선인 거랑 2선, 3선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할을 저는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이곳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무너지고 상임위와 또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봐주고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제 충분히 내용에 대한 토론 또 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지 그렇게 방법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강병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마치 저희 여당 위원들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주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로서 표명을 하자는 거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허용하고 봐주자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강병원 위원님 발언은 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장관님, 지금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지금 한 번은, 솔직한 얘기로 시정 좀 해 달라고 우리 당 쪽에서는 이렇게 모으는데,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난번, 재선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니까 지금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시정 쪽으로 가 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긴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아까 그 답변이 노사정 대타협 이런 부분, 솔직한 얘기로 저는 다 이해해요. 충분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이런 데 대한 답변을 다 들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헌법을 다 아는, 국회의원들이 초선이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정말 우리 20대만은 협치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야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한 것인데, 정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장관님께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췌기 좀 박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대타협이라는 것은 작년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였었고 또 9월 15일 대타협 65개 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미래 방향을 밝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노사정은 거의 날을 새 가면서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격차를 해소를 하려면 국민들한테 또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사업주한테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확히 알리는 게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래서 장관님,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절차에 대해서는……

○문진국 위원 절차 문제가…… 그러면 아까 절차가 잘못됐다면 깔끔하게 ‘그래, 과거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또 그랬다. 그리고 정말 여야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선처해 달라’ 이런 말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알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에 다 세 번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게 깔끔하게 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잘못됐고, 또 오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게 얘기를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들 얘기를 해서……

당사자가 그 정도, 모르고 하는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여기서 시인하면서 ‘앞으

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도 없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앞으로 그 부분은 하여튼……

○**문진국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저도 이렇게……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이 얘기는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쉽게 끝나고 빨리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들어 보니까 사실 엄청난 일이 저질러진 거거든요, 집행부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노련하신 분이시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도 워낙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성품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노동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정말 우리 환노위가 좀 잘 갈 수 있는 협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도 앞으로 더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제안들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길게 토론하는 문제가 사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국가채정법이나 국회법이나 이런 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에 위원님,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河泰慶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양해보다도 야당 위원님들 말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의 내용이 당파적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지만.

청년고용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사정에서 합의한 어젠다를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의 성격은 국민을 위해서 일 더 잘해 보려고 적절한 홍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과실이다, 이게 사건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 열심히 한 사람들, 그것을 징계를 합니까? 일 열심히 해서 실수를 하나 했으면 '앞으로는 실수는 하지 마라', '미안합니다' 이 정도가 국민적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내용이 부적절하다…… 아니, 내용이 부적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야당 위원님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고용 늘리자는 데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하는 것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절차적 과실을 가지고 장관을 잡자느니 징계를 하자느니, 이것을 어떻게 여당 입장에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실 거면 환노위 앞으로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지 한번 꼼꼼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 좀 하세요.

○**위원장 홍영표** 동료에 대한 비방성에 가까운 발언들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그래서 하태경 간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소위원회에서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불 꺼진 국회'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폄훼하는 내용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절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왜? 다른 자리도 아닌 결산 심사 자리인데, 결산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예비비 지출이 하태경 위원님은 실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실수를 임이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 했잖아요, 여러 번의 실수를 여러 번 시정요구를? 그런데……

○**河泰慶 위원** '불 꺼진 국회'는 지금 내용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신창현 위원** 글썄, 여러 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시정보다 좀 더 무거운 시정조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징계 아니냐 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태경 위원님이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위원** 작년 홍보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뭔지 가져와 보세요.

○**신창현 위원** 제가 내용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河泰慶 위원** 내용 이야기를 해야지요. 내용이 중요하지.

○**신창현 위원** 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홍영표** 자, 신창현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났으니까 다른 분들은 기다려 주십시오.

발언 끝나면 해 주십시오.

끝나셨습니까?

○**신창현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임이자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잠깐요.

한정애 위원이 발언 요청을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이자 위원** 아니, 신창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홍영표** 원래 국회 회의 진행은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임이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래서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게 우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문진국 위원** 간사님이 꺼내 났으니까 이게……

○**한정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발언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됐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도 기존 예산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그랬을 리가 없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그냥 관계당국과 사전에 이미 협의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하태경 위원님, 원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많고 문제가 많아서 내용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다들 하셨고요.

지금 제가 수정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도저히 못 받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河泰慶 위원** 징계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홍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사과를 하세요. 저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복사해서 다 돌릴 테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 다시 지적을 해 보세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내용은 그냥 바깥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만 갖고 계십니다. 그거 말고 작년 초에 언론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마치 그게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해서 돈을 주고 기사를 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다 했던 것인데 다시 여기다 올려야 되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河泰慶 위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내세요. 발언 끝내십시오.

○**한정애 위원**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 제가 발언을 할게요.

그래서 징계를 못 받으신다고 하니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얘기를 하셨던 시정, 시정 지시를 받으시고 대신에 노동부의 경우에는……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이게 작년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올해도 이미 5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중에 3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내년에도 가서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시정을,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신 시정을 받는 대신에 올해 쓴 내역 그리고 집행한 내역과 사용 계획하고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요……

아니, 잠깐요.

○**강병원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잠깐요.

위원님들, 잠깐……

지금 이렇게 회의가 혼란스럽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간사님께서 논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河泰慶 위원** 첫 번째, 신규 자료 제출 요구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에 가까운 요구다, 정부의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개입하자는 것은 우리 대통령중심제 정부의 성격을 바꾸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환노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개헌특위에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즉 검토를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 홍보 내용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불가피하게 의결하지 못하는 내용은 자동적으로 예결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런데 하태경 위원님, ‘불가피하게 의결하지 못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河泰慶 위원** 합의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 합의 의결이 어려울 때…… 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河泰慶 위원** 의결 부분은 저희들이 다수결 전횡 때문에 다수결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그래서 그 전통이 깨지게 되면 향후 상임위에 있어서도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또 시시때때로 파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모든 상황, 회의 진행이라든가 일반 안건의 전반에 대해서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법률을 저희가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진화법에 의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회의 진행이라든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결을 해 왔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제가 우리 동료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특히 사업비라기보다 광고·홍보로 쓴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국정을 우리가 알아보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대통령제, 권력분립과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른바 합의 처리가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선진화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기존의 새누리당 입장과는 배치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합의를 추구하되 정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위원님들……

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그간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쓰는 것이 대부분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지 않는 게 사실은 상례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업비에 해당되는 정책홍보비로 쓰였기 때문에 왜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이제 곧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다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다 심사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역시 사실은 홍보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잡은 것이었으면 그 내용이 제대로 잡혀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홍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자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 그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조치를 취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합의하에 저는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표결 처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저는 우선 먼저 신창현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질문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건국60주년 사업하고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 예비비 전용 문제, 그다음에 실행정수도 건설 광고비, 해외순방 계기 활용 홍보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홍보처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건국60주년 얘기는 2008년도 국무총리실 예비비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었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예비비를 사전에 전용하거나 또 배정받기 전에 활용한 부분들이 주의나 시정을 받아서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까 한정에 간사님께서 짚으신 부분, 고용부 예비비 편성 사례를 봤을 때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는 다 합리적 사유가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주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도에만 노사정 대타협

관련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물론 1차, 2차, 3차 여러 차례가 있었다고 절차상의 하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분명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했다고 인정했지요.

그러면 죽 봤을 때 예비비 편성 관련되어 가지고 처음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가혹하게 갖고 가지 말고 문진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치를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치를 하는 측면에서라도 시정조치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 도출을 노력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표결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소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전체회의에서도 조금 전에 한정에 위원님께서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려고 2016년 현재까지의 예비비 승인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정을 받아들이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 상태라서 더 이상 아마 의견을 좁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결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징계안과 시정 2개였는데 결국에는 시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없고 징계가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는 그 안을 표결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한 분만 더 지금 표결 의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님!

○문진국 위원 저는 오늘 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이 앞으로, 뭔가 느낌이라는 게 참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위원인데 아까 제가 협치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했냐 하면, 저도 유심히 오늘 듣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몇 개를 하시면서 과거 것에는, 아까 임이자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돼서 지금 이렇게 과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을 때 바로 ‘아, 이래서 뭔가 잘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솔직히 얘기를 드린다면 징벌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처음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래서 이번이 처음이라면 정말 이것이 꼭 이렇게 별을 쥐 가지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여야가 같이 함께 정말 올해……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이렇게 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적을 당했으니까, 지적을 당했으면 내년에는 이제 오늘 지적된 것 가지고 또 감사를 결과를 보고 있는 건데 그때 가서 해도 뭐 충분히 늦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것이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협치가 됨으로써 서로들…… 위원님들끼리 서로 뭔가 이 환노위를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결 처리를 얘기하시면 모든 일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지든 이기든 다 표결 처리입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오늘 남겨 놓으면, 오늘 환노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시 그 얘기를 뒤 돌려서 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을 때 정리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다면, 뭐 이것이 과거가 없고 처음이라면 바로 이번만은 관대하게…… 또 장관도 그 정도의 사과를 했다면, 표명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나가서 표결로 간다면 앞으로 이게 하나의 전례로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표결을 안 하고 어떻게 종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진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위원장 홍영표 제안을 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예, 제안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서로 마음을 비워서 정말……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잖아요. 오늘 충분한 것을 들었으니까 이것이 정말 올해 해서 내년에 결산이 된다고 그래서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河泰慶 위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예,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첫 번째는 몇 가지 좀 중재, 절충될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정에 감사님께서 시정을 받아들이되 추가자료, 신규 추가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의미는 일단 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시정을 받아들이고, 추가자료 제출 요건 이 문제는 저희 환노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중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자,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검토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저희들은 지금 조금 그 부분 급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오늘 예비비 외에 환경부, 기상청, 노동부 결산 건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결이 되었고 의결이 되면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의 의결이, 뭐 어쨌든 의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심사 미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그 일정에 못 맞추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은 심사 미료된 상태에서 예비비만 예결위로 넘기는 안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해 봤는데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홍보비 지출내역들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갈구하는 부모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내용에 조금 당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시 밝혀 내지 못하면 우리 여당 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내용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밝혀라, 밝히지 못하면 사과해라 그 요구를 정식으로 지금 제기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그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뭐 못할 얘기들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상 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논의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합의를 하고 자료제출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얘기가 있으니 추후 논의하자’,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지금 시정요구와 자료제출건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징계 사유에 합당하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냥 말로만 매번 사과하시면 뭐합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장관님께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합당하게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그것이 요청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2개는 하나의 쌍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은 시정대로 하고 자료제출건은 자료제출건 대로 논쟁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전에 하도 그 문제가 논란이 돼서 입법조사처에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 봤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 저에게 준 답변은 국가재정법의 총칙 1장 1조(목적)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료제출권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이것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안이 국가재정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그 자료 제출에 응해야 된다”라고 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굉장한 논란이 되고 심각한 토의가 되어야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5년 시정에 대한 장관님의 여러 가지 각오와 판단이 2016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다들 바쁘신데 오늘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결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결해서 처리하자는 의견과 그냥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지 말고 그 상태로 예결위로 넘기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말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태경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내용이 그거 아닌가요?
 ○河泰慶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자, 그러면 다음은 야당 위원님들은……
 ○河泰慶 위원 아직 야당 위원님들이……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여야 할 것 없이 말씀을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표결을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부대의견을 만들어서 예결위로 넘기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우리 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결산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성안을 해서 제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나감시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첫 결산 때부터 파행으로 이끄시면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볼 낫이 있습니까?
 나가시지요.
 ○위원장 홍영표 좀 앉아 계시고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 온 것 아닙니까……
 ○河泰慶 위원 아니, 간사 간 합의도 안 했고, 지금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님이 전횡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혼자서.
 ○강병원 위원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홍영표 지금 하태경 위원의 발언은,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河泰慶 위원 자, 나가십시오.
 ○강병원 위원 하 위원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河泰慶 위원 간사님, 간사 합의 했습니까?
 ○강병원 위원 아니, 간사 합의 놔두고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홍보비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河泰慶 위원 표결하자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간사 합의 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사과하세요.
 따질 거예요, 계속.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홍영표 참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요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 부대의견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없으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9인, 찬성 9인으로 징계요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 부대의견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께서 환경부장관님께 현안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그거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1분만……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하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형수 위원 어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문 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형수 위원 그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라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확답,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서형수 위원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

리하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입장 정리할 상황은 아니
고요.

지금 법에 영향평가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
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
률에 보면 10만 평이지요, 33만㎡ 이상의 국방군
사시설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내의 사업으로
는 20만㎡ 이상 이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지를 보지 못한 상태에
서는 지금 대상인지 아닌지도 우선 알 수가 없고
요, 또 이게 SOFA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대상이다 아니다 자체도 아
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형수 위원**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
시겠다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를 국방부장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
다.

○**서형수 위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실 때,
협의할 때도 환경부 쪽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대상이 되면 가능
하면 환경에 비가역적인 나쁜 영향이 없도록 이
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
에 보면 평가 대상은 아니었으나 국방부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의견을 제시한 사업이 1건 있습니
다, 2015년인데요. 예컨대 이것이 설사 대상이 아
니더라도 국방부 쪽에서 의견 요청이 오면 거기
에 대한 의견은 드릴 용의가 있으시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경우에도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가 의견은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까 제가 의결하면서 다른 걸
더 하나 했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십니까?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위원장 홍영표**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정미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권한
은 어느 부처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책임 권한이요?

○**이정미 위원** 예, 이 환경영향평가를 책임지는
부처가 어디냐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저
희 환경부 소관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환경부 소관이지요.

환경부장관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국방부장관께서 몇 시간 뒤에 성주의 사드 배
치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명시적이었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환경부장관님께서 하실 문제는 아니
고 언론에 이미 국방부장관께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언론보도
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런 발표, 그러니까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관련한 환경부장관님과
의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책임 부처
의 판단을 듣지 않고 국방부장관께서 이렇게 개
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만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 그 부분은 국방부장
관님께서도 제가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본인은 잘 모를 것
입니다,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법상의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게 되겠지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님께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저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들
이 있으니까 책임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 내용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
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라고 저희들이 이
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정미 위원**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
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협의가 없었고, 첫 번째 협
의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
고 볼 때 환경부장관님은 여러 가지 판단이 다르
시고 그런데 국방부장관님은 환경부장관님과 협
의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사

실관계 아십니까?

○**위원장 홍영표** 좀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아니냐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 대상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정미 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장관님이 사전에 환경부장관님과……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이정미 위원** 이 협의가 없으셨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을 좀 다 들으세요.

대상이나 아니냐를 밝힐 때 사전에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밝혀라 이런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법상 평가 대상이나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고 확정됐을 때 평가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장관이 발언할 때 꼭 환경부장관한테 확인을 받고 발언하라 이렇게 돼 있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외적으로 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약간 보완해서 정확하게 의결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창현 위원** 잠깐만요, 징계 아니었나요?

○**위원장 홍영표** 그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킨 안을 포함해서입니다.

○**신창현 위원** 아, 포함해서……

○**위원장 홍영표**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 어떤……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본 위원회 의결로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해서 보고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예비비를 작성한 그 명세서와 그리고 그것의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창현 위원** 모든 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홍영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2016년도 고용노동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은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소위원회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를 했었고 서로의 입장을 듣고 또 토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까지 그 쟁점이 해소되지 못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표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안에 대한 통과입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이라든지 일반 안전에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장관님들……

인사를 드려야 되나요?

원래 장관님들이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 간단하게 말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귀중한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환경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보완해 가겠습니다.

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기상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상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을 포함한 11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각종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날씨 현상예보를 영향예보로 전환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물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결산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데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모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결산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다음 연도 결산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나 정책추진 방향들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역시 결산 심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시정되고 정부의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서 국회 결산 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김삼화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환 경 정 책 실 장	이 민 호		
물 환 경 정 책 국 장	김 영 훈		
자 원 순 환 국 장	신 진 수		
기 후 대 기 정 책 관	나 정 균		
환 경 정 책 관	박 광 석		
환 경 보 건 정 책 관	이 호 중		
국 제 협 력 관	주 대 영		
대 변 인	유 제 철		
감 사 관	이 경 용		

고용노동부

장 관	이 기 권
기 획 조 정 실 장	박 중 길
고 용 정 책 실 장	문 기 섭
노 동 정 책 실 장	신 기 창
노 동 시 장 정 책 관	김 경 선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장 신 철
청 년 여 성 고 용 정 책 관	나 영 돈
고 령 사 회 인 력 정 책 관	박 성 희
직 업 능 력 정 책 국 장	권 기 섭
노 사 협 력 정 책 관	임 서 정
근 로 기 준 정 책 관	정 지 원

공 공 노 사 정 책 관	황 보 국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국 장	박 화 진
정 책 기 획 관	김 용 호
국 제 협 력 관	정 민 오
대 변 인	정 형 우
감 사 관	조 병 기
기 상 청	
청 장	고 윤 화
차 장	남 재 철
기 획 조 정 관	이 우 진
예 보 국 장	신 도 식
관 측 기 반 국 장	이 미 선
기 후 과 학 국 장	정 준 석
기 상 서 비 스 진 흥 국 장	유 희 동
지 진 화 산 관 리 관	김 남 욱
국 립 기 상 과 학 원 장	조 천 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7. 7. 이언주·정춘숙·이훈·양승조·백재현·이춘석·김상희·한정애·정재호·신창현·남인순·홍익표·우원식·김삼화·금태섭·송기석 의원 발의)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7. 7. 이언주·정춘숙·이훈·양승조·백재현·이춘석·김상희·한정애·정재호·신창현·남인순·홍익표·우원식·김삼화·금태섭·송기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8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6. 7. 7.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박광운·김경진·김중훈·서형수·윤후덕 의원 발의)

7월 8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6. 7. 8. 송옥주·고용진·김정우·김철민·문미옥·박경미·박영선·송영길·심재권·양승조·윤관석·윤후덕·이정미·임종성·정동영·정성호·정춘숙·최경환(국)·최도자·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7. 8. 이학재 · 유승민 · 김광립 · 함진규 · 박명재 · 윤재옥 · 홍철호 · 이종배 · 서청원 · 이우현 · 신상진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 발의)

(2016. 7. 8. 박광온 · 김정우 · 이석현 · 김해영 · 김종민 · 신경민 · 권칠승 · 김태년 · 문미옥 · 주승용 · 김철민 · 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6. 7. 11. 김성태 · 장제원 · 윤후덕 · 신동근 · 서형수 · 정유섭 · 김학용 · 민홍철 · 유승민 · 신상진 · 최도자 · 양승조 · 홍철호 · 김승희 · 박덕흠 · 이학재 의원 발의)

7월 12일 회부됨